

대학원 화학공학과 입학전형 내규

1. 입학전형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 내규로 정한다.

1.1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는 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② 학업 및 연구계획서(학과소정양식), ③ 출신 학교 평판으로 한다. 구술시험은 ① 전공에 대한 지식, ②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으로 시행한다.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총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한다.

1.2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 특별전형의 특성상 ① 경력증명서, ② 추천서(학과소정양식)의 제출을 추가한다.

대학원 화학공학과 종합시험 내규

제1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추가]

제2조(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시험과목) 대학원 화학공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1과목, 박사학위과정은 2과목으로 한다.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화학공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 문항별배점, 평가기준 등을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

제6조(문제 유형 및 배점)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조(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과목당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매학기초 2주 안에 시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학원 교수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시험결과 통지) 학과(부)주임교수는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학기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의 면제)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추가]

제11조(보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추가]